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4749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1.

2.

3.

4.

5.

6.

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임영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비엠

서울 종로구 종로 104 (종로2가)

대표이사 오재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양대권, 신현욱, 김기훈

제 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소608976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2.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각 20,000원, 원고

에게 각 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취업 등을 위하여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사가 개발한 국제표준 영어능력평가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이하

'토익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들이고,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 토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토익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접수기간에 토익시험 접수를 하고 즉시 응시료를 지급한 후 접수증을 출력받았으나, 시험 3일 이전에 토익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피고로부터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았다.

원고	접수일	취소일	응시료	환불액 (환불비율)	시험일	취소일에서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
	2010.11.20.	2010.12.9.	39,000	15,600 (40%)	2010.12.26. (제217회)	17일
	2012.9.5.	2012.10.4.	42,000	16,800 (40%)	2012.10.13. (제243회)	9일
	2013.5.8.	2013.6.24	34,000	13,600 (40%)	2013.6.30. (제254회)	6일
	2012.1.21.	2012.2.21.	42,000	16,800 (40%)	2012.2.26. (제234회)	5일
	2012.9.13.	2012.10.9.	42,000	16,800 (40%)	2012.10.28. (제244회)	19일
	2013.5.14.	2013.6.13.	42,000	16,800 (40%)	2013.6.30. (제254회)	17일
	2013.2.22.	2013.3.27.	42,000	16,800 (40%)	2013.3.31. (제250회)	4일
	2010.11.22.	2010.12.8.	39,000	15,600 (40%)	2010.12.26. (제217회)	18일
	2012.10.28.	2012.11.16.	42,000	16,800 (40%)	2012.11.25. (제245회)	9일
	2013.1.7.	2013.1.26.	42,000	25,200 (60%)	2013.2.24. (제249회)	8일

다. 원고들이 토익시험 접수를 할 당시 피고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중 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취소수수료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규정 중 제4조 제2항(접수기간 이후 취소)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환불조항'이라 한다].

제4조(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한다.

1. 접수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 환불

2. 접수기간 이후 취소

가) 1차 취소 신청 기간 : 인터넷 정기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나)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1주간(2012년 1월 정기시험부터 적용)

-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다) 3차 취소 신청 기간 : 2차 신청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

- 응시료의 4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자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환불조항이 포함된 피고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은 약관규제법 제2조 소정의 약관인바, ① 특정 점수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익시험에 응시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토익시험에 응시한 후 해당 시험의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다음 시험에 접수하는데, 당해 시험의 점수를 확인한 후 다음 시험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일은 다음 시험의 정기접수기간 마감 후 2주가 지난 시점이어서 이 사건 환불조항에 따라 응시료의 40%밖에 환불받을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정기접수기간 외에 시험 3일 전까지 특별추가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토익시험 3일 전까지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정기접수기간에 접수된 응시좌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좌석은 특별추가접수기간에 재판매할 수 있으므로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한 응시자의 시험 취소로 인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접수기간 이후의 취소에 대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환불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1호, 제8조, 제9조 5호의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토익시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청약철회등 기간'을 법에 정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또한 같은 항 1호 단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

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바,

① 원고들과 피고가 약정한 '청약철회등 기간'은 이 사건 환불조항에 따라 취소 신청이 가능한 기간인 토익시험 접수일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이고, ② 또한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제공하는 토익시험을 공급받은 날 내지 공급이 시작된 날은 응시자가 해당 토익시험에 응시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토익시험에 응시하기 3일 이전에 토익시험 접수를 취소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것임에도 원고들에게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환불조항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환불조항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환불조항에 따라 피고가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그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각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환불조항은 정기접수기간 이후에도 접수자에게 자유로이 시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민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접수자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그러한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접수자들의 이익과 피고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이므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정기접수기간 이후의 시험 취소에 관한 이 사건 환불조항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고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접수기간(다만, 2013

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정기접수기간 종료 전 7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에 한정되며,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1호 단서 소정의 '재화등이 공급이 시작된 날'은 접수일 또는 정기접수기간이 종료된 직후이다.

4. 판 단

가. 이 사건 환불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인지 여부

우선, 피고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은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토익시험 응시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익시험 응시자들이 특정 접수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시험의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다음 시험에 미리 접수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모든 응시자에게 공통된 사정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약관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매회 평균 약 15만 명이 응시하는 토익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 3개월 전부터 해당 시험의 접수 인원을 예상하여 고사장 섭외 및 홈페이지 안내 게시 등 홍보업무를 진행하고 각종 시험 진행용 물품을 준비 · 점검하며, 정기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정기접수 인원과 예측한 특별추가접수 인원에 맞추어 문제지 제작을 위한 인쇄소 섭외, 인쇄용지 주문 및 확보 등 문제지 제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바, 토익시험 3일 전까지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정기접수기간 외에 별도의 특별추가접수기간이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정기접수와 특별추가접수는 그 도입 취지와 목적, 운영 형태 등이 다르므로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정기접수기간에 접수된 응시좌석이 취소될 경우 해당 좌석이 특별추가접수기간에 모두 재판매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위와 같이 피고는 정기접수기간에 접수된 인원에 맞추어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진행하므로 정기접수기간 이후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시험 취소에 신중을 기하게 하여 접수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환불조항 이외에 달리 응사자의 계약 취소에 대비한 제재수단이나 그 이행을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다거나 그 취소수수료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은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에 따라 확립된 것이고, 2010년 법제처로부터 타 국가시험제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합리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유사 시험의 취소 제도에 관한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꽉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환불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 또는 같은 법 제8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같은 법 제9조 제5호의 '계약의 해체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환불조항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먼저, 원고들과 피고가 약정한 청약철회등 기간이 이 사건 환불조항에서 정한 취소 신청기간인 토익시험 접수일부터 시험실시 전일 오후 12시까지인지 여부에 관하

여 보건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9항을 종합하면, 전자상거래법 소정의 '청약철회등 기간'이라 함은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환불조항에서 정한 취소 신청 기간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말하는 '청약철회등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토익시험의 공급이 시작된 날'이 응시자가 해당 토익시험에 응시한 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정기접수 인원에 맞추어 본격적인 시험 준비가 진행되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응시자가 토익시험에 응시한 날을 공급이 시작된 날로 보아 청약철회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모든 응시자가 시험 당일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시험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토익시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토익시험의 공급이 시작된 날은 응시자가 해당 토익시험에 응시한 날이 아니라 해당 토익시험의 정기접수기간이 종료된 날이라 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불조항이 약관규제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박 인 식



판사

박평수

박 평 수



판사

전상범

전 상 범



정본입니다.

2015.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도진국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
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
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